



KC 60335-2-43

(개정 : 2022-02-16)

IEC Ed 4.0 2017-10

전기용품안전기준

Technical Regulations for Electrical and Telecommunication Products and Components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Safety

Part 2-43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

KATS 국가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

목 차

| | |
|--|----|
|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 1 |
| 서문 | 2 |
| 1 적용 범위 (Scope) | 3 |
| 2 인용 표준 (Normative references) | 3 |
| 3 용어와 정의 (Terms and definitions) | 4 |
| 4 일반 요구 사항 (General requirement) | 5 |
|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General conditions for the tests) | 5 |
| 6 분 류 (Classification) | 5 |
| 7 표시 및 사용 설명서 (Marking and instructions) | 5 |
|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Protection against access to live parts) | 5 |
| 9 전동기 구동 기기의 기동 (Starting of motor-operated appliance) | 5 |
| 10 정격 입력 및 정격 전류 (Power input and current) | 6 |
| 11 온도 상승 (Heating) | 6 |
| 12 공 란 (Void) | 7 |
| 13 운전시의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Leakage current and electric strength at operating temperature) | 7 |
| 14 과도 과전압 (Transient overvoltages) | 7 |
| 15 내 습 성 (Moisture resistance) | 7 |
| 16 누설 전류 및 절연 내력 (Leakage current and electric strength) | 8 |
| 17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Overload protection of transformers and associated circuits) | 8 |
| 18 내구성 (Endurance) | 8 |
| 19 이상 운전 (Abnormal operation) | 8 |
| 20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Stability and mechanical hazards) | 9 |
| 21 기계적 강도 (Mechanical strength) | 10 |
| 22 구조 (Construction) | 10 |
| 23 내부 배선(Internal wiring) | 10 |
| 24 부 품 (Components) | 11 |
|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Supply connection and external flexible cords) | 11 |
| 26 외부 전선용 단자 (Terminals for external conductors) | 11 |
| 27 접지 접속 (Provision for earthing) | 11 |
| 28 나사 및 접속 (Screws and connections) | 11 |
| 29 공간 거리, 연면 거리 및 고체 절연 (Clearances, creepage distances and solid insulation) .. | 11 |
| 30 내열성 및 내화성 (Resistance to heat and fire) | 11 |
| 31 내부식성 (Resistance to rusting) | 12 |
|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성 (Radiation, toxicity and similar hazards) | 12 |
| 부 속 서 (Annex) | 13 |
| 참고 문헌 (References) | 13 |
| 해 설 1 | 14 |
| 해 설 2 | 15 |

전기용품안전기준 제정, 개정, 폐지 이력 및 고시현황

| | |
|------------|------------------------------|
| 제정 기술표준원 | 고시 제 2004-0054 호(2000.04.06) |
| 개정 기술표준원 | 고시 제2002-0280호(2002.10.12) |
| 개정 기술표준원 | 고시 제2007-01264호(2007.12.28) |
| 개정 기술표준원 | 고시 제2008-0789호(2008.11.14) |
| 개정 기술표준원 | 고시 제2011-0558호(2011.12.02) |
|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 고시 제2014-0421 호(2014.09.03) |
|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 고시 제2015-0383호(2015.09.23) |
| 개정 국가기술표준원 | 고시 제2022-0016호(2022.02.16.) |

부 칙(고시 제2022-0016호, 2022.02.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안전기준(고시 2015.09.23.)은 1년 후(2023.02.15.)까지 병행 적용한다.

전기용품안전기준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Part 2-43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

이 안전기준은 2017년 10월에 제4.0판으로 발행된 IEC 60035-2-43,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3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을 기초로, 기술적 내용 및 대응 국제표준의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KS C IEC 60335-2-43(2019.12)을 인용 채택한다.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제2-43부 : 의류 건조기 및 타월걸이의 개별 요구사항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3: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

1 적용범위

제1부의 이 절을 다음으로 대체한다.

이 안전기준은 정격 전압이 250 V 이하인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따뜻한 공기의 흐름 사이에 놓인 선반상에서 직물을 건조시키기 위한 전기 의류 건조기, 신발류나 장갑을 건조시키기 위한 의류 건조기 및 전기 타월걸이의 안전성에 대하여 적용한다.

비고 101 옷걸이는 캐비닛에 고정되어 있거나 자유로이 움직이도록 설치되어 있다. 공기는 자연풍 또는 인공일 수 있다.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기기일지라도 점포, 경공업 및 농장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대중에게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 안전기준을 적용한다.

이 안전기준에는 일반인 및 가정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기기에 의한 일반적인 위해 요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이 안전기준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상태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는다.

- 신체, 감각, 정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감독이나 지시 없이는 안전하게 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어린이 포함)
- 기기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

비고 102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 탑재용 기기에는 필요하다면 추가사항이 요구될 수 있다.
- 다른 나라에서는 보건 관계기관, 노동안전 관계기관, 수도 관련기관, 기타 정부기관에 의해 요구사항을 별도로 추가 규정할 수 있다.

비고 103 이 안전기준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전기 탈수기(KS C IEC 60335-2-4)
- 회전식 건조기(KS C IEC 60335-2-11)
- 산업용 전용으로 설계된 기기
- 부식성이나 폭발성이 있는 대기(먼지, 수증기 또는 가스)와 같은 특별한 조건에 사용되는 기기

2 인용표준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 용어와 정의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1.9 대체

통상 동작(normal operation)

다음 조건에서의 기기 동작

취급설명서에 따라 직물을 선반 또는 걸이에 걸어놓는다. 천은 약 700 mm × 700 mm의 크기를 갖고 건조 시 140 g/m² ~ 175 g/m²의 무게를 갖는 2중으로 께맨 세탁한 면 옷감이다.

직물을 지지하는 가열면을 보유한 기기에 대해서는 4겹의 직물을 이용한다. 온풍에 의하여 직물을 건조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1겹의 직물을 사용한다.

비고 101 불확실할 경우, 면 시트를 상대 습도 (60 ± 5) %, (20 ± 5) °C의 온도에서 약 24시간 동안 방치한다.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의 경우, 공기 출구가 있고 건조물이 모든 공기 출구를 덮을 수 있다면, 보호장치의 동작 없이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공기 출구를 여러 겹의 직물로 막는다.

3.5 추가 정의

3.5.101

의류 건조기(clothes dryer)

공기 흐름을 이용하여 의류를 건조시키는 용도로서 텀블링이나 회전과 같은 기계적 동작이 없는 기기

비고 이 기기는 신발류, 장갑 등의 건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3.5.102

타월걸이(towel rail)

타월을 걸고, 데우며, 건조시키는 기기

비고 이 기기는 수영복, 목욕 가운 등의 건조에도 적용할 수 있다.

3.6 추가 정의

3.6.101

자유 공간(free space)

어린이가 빠질 수 있고, 도어나 뚜껑을 열고 분리할 수 있는 내부 부분(선반과 용기 포함)을 제거한 후에 닿을 수 있는 곳으로 체적이 60 L를 초과하는 공간

비고 체적을 계산할 때 단일 치수가 150 mm를 초과하지 않거나 두 개의 직교 치수 (각각 200 mm를 초과하지 않음.)를 갖는 공간은 무시한다.

4 일반 요구사항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5 시험에 관한 일반 조건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6 분류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6.2 추가

사용 시 전자 부품이 신발류나 장갑 아래에 위치하거나 그 안에 삽입되는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는 IPX2 이상이어야 한다. 그 외 모든 기기는 IPX1 이상이어야 한다.

7 표시 및 사용 설명서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7.12 추가

의류 건조기의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 이 기기는 물로 세탁 후 건조하는 것만 해당한다.

7.12.1 추가

고정형 **타월걸이**의 사용 설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고 — 아주 어린 아기에 대한 위해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위치의 **타월걸이**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적어도 600 mm 이상이 되도록 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욕조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정형 **타월걸이**의 사용 설명서에는 이 **타월걸이**는 욕조나 샤워기에 있는 사람이 스위치 기타 제어장치를 접촉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타월걸이**가 적어도 IPX4인 경우에는 이 지시사항은 필요하지 않다.

8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9 전동기 구동기기의 기동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0 입력 및 전류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1 온도 상승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1.1 추가

타월걸이는 또한 11.101의 시험을 적용한다.

11.4 추가

전동기, 변압기 또는 **전자 회로**를 포함하고 있는 기기의 온도 상승 제한값을 초과한 경우, 그리고 입력 전력이 **정격 입력**보다 낮은 경우, 시험은 기기에 공급되는 **정격 전압**의 1.06배의 전압을 가하여 반복 시험한다.

11.6 추가

복합기는 **전열기**로서 운전한다.

11.7 대체

기기는 정상 상태에 이를 때까지 운전한다.

타이머로 건조 동작을 제어하는 경우, 타이머를 최대 시간으로 설정하여 2회의 사이클로 **의류 건조기**를 작동시킨다.

11.8 추가

섬유의 온도 상승은 75 K 이하여야 한다.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의 공기 출구에서 온도 상승은 표3의 단시간만 잡는 핸들에 대한 한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기기를 **정격 입력**의 1.15배로 운전한 경우에는 전동기, **전자 회로** 변압기와 부품 및 그것들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의 온도 상승은 제한값을 초과할 수 있다.

기름을 사용하는 기기인 경우, 기름과 접촉하는 부분의 온도 상승치는 측정하지 않는다.

11.101 **타월걸이**는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정격 입력**으로 운전한다.

표면의 온도 상승은 다음의 값 이하여야 한다.

- 금속 및 도금된 금속 60 K
- 유리 같은 에나멜을 입힌 금속 65 K
- 유리 및 세라믹 표면 70 K
- 0.3 mm를 초과하는 두께를 갖는 플라스틱 85 K

또한 두께가 0.1 mm 미만인 금속으로 마무리를 한 플라스틱 물질에는 85 K의 온도 상승 제한값을 적용한다.

비고 플라스틱 표면의 두께가 0.3 mm를 초과하지 못할 때에는 사용 재료를 보호하는 온도 상승 한계값을 적용한다.

12 공란

13 운전 시의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4 과도 과전압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5 내습성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5.2 대체

전기 부품이 직물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의류 건조기**는 낙수가 전기 절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실험으로 확인한다.

특수 제작된 코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X형 부착의 의류 건조기**는 표 13에 규정된 최소 단면적의 가장 가벼운 허용 가능한 유연성 코드 유형을 구비한다.

약 1 %의 NaCl을 포함하는 물을 최상층의 길이 위에서 12 mL/min의 비율로 떨어뜨려서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 사용 가능 용기 부피의 m³당 3 L의 용액을 사용한다.

비고 101 다음과 같은 치수는 사용 가능 용기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된다.

- 높이: 최상부 첫 번째 레일의 윗부분과 전열소자 표면 윗부분 사이의 최대 거리
- 폭: 가장 긴 레일의 길이
- 깊이: 바깥쪽 레일 사이의 전체 수평 거리

기기는 16.3의 내전압 시험에 견디고, 검사는 29절에 규정된 값 이하의 연면거리와 공간거리가 감소 되는 절연물상의 물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16 누설전류 및 절연내력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7 변압기 및 관련 회로의 과부하 보호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8 내구성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하지 않는다.

19 이상 운전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19.1 추가

시험할 때마다 새로운 직물을 사용한다.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는 19.101 및 19.102의 시험을 적용한다.

19.2 추가

직물을 받치는 면이 가열되는 기기에 있어서는 8장의 직물을 사용한다. 온풍에 의하여 직물을 건조 하는 기기인 경우, 가열부가 천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가열소자 보호망 또는 공기 분출구 위에 2장의 천을 사용한다.

시험은 가장 불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직물의 다양한 위치를 고려하면서 가드 또는 공기 입구를 직 물로 완전히 덮은 후 가드 또는 공기 입구의 80 %를 직물로 덮은 상태에서 실시한다.

팬을 내장한 기기들은 보호망 또는 흡입구를 덮지 않고 전동기를 끈 상태로도 시험한다.

가열소자를 직물 위쪽에 배치한 기기는 걸이에 2장의 직물을 걸어 둔 상태로 시험한다. 이 걸이는 통상 사용 위치에서 50 mm를 올리거나 구조상 허용된 최대 길이 중 작은 쪽으로 한다.

보관할 때에 접어서 저장하는 벽 부착용 기기는 직물을 사용하지 않고 접어둔 상태에서 시험한다.

19.9 추가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는 연속적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19.10 추가

시험은 가열 장치를 분리하거나 끈 상태에서 실시한다.

19.13 추가

직물의 온도 상승은 150 K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의 경우 직물의 온도 상승은 75 K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섬유가 눈에 보일 정도로 그을리지 않아야 한다.

19.101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를 정상 상태로 안정될 때까지 11절에 규정된 대로 작동시킨다. 이후 가열 장치로의 전력 입력을 **정격 입력** 1.15배로 유지하면서 모터의 가동 속도가 **온도과승 방지장치**의 작동을 막을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할 때까지 모터 단자의 전압을 줄인다.

전압을 다음과 같이 줄인다.

- 동작 전압이 30 V 이하인 모터의 경우 분당 1 V
- 동작 전압이 30 V 초과인 모터의 경우 분당 5 V

이후 정상 상태로 안정될 때까지 기기를 작동시킨다.

만약 열 설정 스위치가 있다면 이 스위치를 각 위치에 놓고서 시험을 반복한다. 스위치를 가장 높은 열 설정 위치에 두고 **정격 입력** 1.15배를 주는 값으로 가열 장치 스위치로의 전압을 유지한다.

19.102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휴대용 의류 건조기**를 **정격 입력**의 1.15배로 **통상 동작** 상태로 작동시킨다.

직사각형 종이 한 장을 추가 압력 없이 공기 입구에 맞대어 잡는다. 이 종이는 공기 입구가 위치한 표면을 덮기에 충분한 면적을 가지며, 가장 불리한 조건이 되도록 공기 흐름을 제한하기 위한 방향으로 종이를 움직인다.

종이의 비질량은 $80 \text{ g/m}^2 \pm 16 \text{ g/m}^2$ 이다.

시험은 **온도과승 방지장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종이를 배치한 상태에서 실시한다.

20 안정성 및 기계적 위험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0.101 접는 형태의 벽걸이형 **의류 건조기**는 통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힘에 견뎌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에 의해서 판정한다.

기기는 **통상 동작** 상태에서 규정된 부하를 인가한 상태 또는 천이 없는 상태 중 어느 쪽이든 불리한 쪽으로 시험한다. 지지기구 각 주요부에 50 N의 힘이 가해지도록 한다.

건조기가 전도되지 않아야 한다.

20.102 자유 공간을 포함하는 **의류 건조기**의 도어는 안쪽에서 열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 검사로 측정하여,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도어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경첩 축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의 중간지점에서, 기기의 각 해당 도어의 닿을 수 있는 안쪽 지점에 해당하는 지점에 힘을 가한다.

이 시험은 15 N/s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가하여야 하며, 도어는 힘이 70 N를 초과하기 전에 열려야 한다.

20.103 수평으로 경첩이 달린 도어가 있는 기기는 열린 도어에 하중을 가했을 때, 적절한 안정성을 가져야 한다.

적합 여부는 다음 시험으로 판정한다.

비어 있는 기기를 수평 표면 위에 놓고, 23 kg의 질량을 열린 도어의 중심에 가한다.

기기가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

비고 도어와 경첩의 손상 및 변형은 무시한다.

21 기계적 강도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2 구조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2.40 추가

19절에 대한 적합 여부가 **자동복귀형 온도과승 방지장치**의 작동에 의존한다면,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의류 건조기**의 경우, 스위치가 꺼짐 위치일 때 **전자 회로**를 분리시켜야 한다.

23 내부 배선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3.3 추가

기기 보관 시에만 구부러지는 신발류 또는 장갑 건조용 휴대용 **의류 건조기**의 도체에 대한 굽힘 횟수는 5 000이다.

24 부품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4.101 19.4에 적합하기 위한 **온도과승 방지장치**는 비자동복귀형이어야 한다.

적합 여부는 육안검사로 판정한다.

25 전원 접속 및 외부 유연성 코드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5.1 수정

기기에는 기기용 인렛을 지니고 있지 않아야 한다.

26 외부 전선용 단자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7 접지 접속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8 나사 및 접속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29 공간거리, 연면거리 및 고체절연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0 내열성 및 내화성

다음을 제외하고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0.2.2 해당사항 없음.

31 내부식성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32 방사선, 유독성 및 이와 유사한 위험

제1부의 이 절을 적용한다.

부속서

제1부의 부속서를 적용한다.

참고문헌

다음은 제외하고 제1부의 참고문헌을 적용한다.

추가 :

KS C IEC 60335-2-4,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4부: 전기 탈수기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335-2-1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 — 제2-11부 : 회전형 전기건조기의 개별 요구사항

해설 1 전기용품안전기준의 한국산업표준과 단일화의 취지

1. 개요

이 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안전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KS)을 최대한 인용하여 단일화한 전기용품안전기준이다.

2. 배경 및 목적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전기제품의 인증을 위한 시험의 기준은 2000년부터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안전성 규격을 도입·인용하여 운영해 왔으며 또한 한국산업표준도 2000년부터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규격의 내용은 양자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과 한국산업표준의 중복인증이 발생하였으며, 기준의 단일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의 단일화는 기업의 인증대상제품의 인증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며, 국가표준인 한국산업표준과 IEC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를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인증기준을 한국산업표준을 기반으로 단일화 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였다.

3. 단일화 방향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적용하기 위한 안전기준을 동일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간단히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채택하면 되겠지만, 전기용품안전기준은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국내기업의 여건에 맞추어 시험항목, 시험방법 및 기준을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변경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과의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단일화 방향을 두 기준 모두 국제표준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 한국산업표준과 중복되는 부분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안전기준에서 그간의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를 운용해 오면서 개정된 시험항목과 시험방법, 변경된 기준은 별도의 항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을 비교하여 한국산업표준의 최신판일 경우는 한국산업표준의 내용을 기준으로 전기용품안전기준의 내용을 개정키로 하며, 이 경우 전기용품안전기준의 구판은 병행 적용함으로써 그간의 인증받은 제품들이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선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기업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표준이 개정되어 판번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 최신판을 한국산업표준으로 개정 요청을 하고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으로 그 내용을 채택함으로써 전기용품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유기준은 한국산업표준에도 제정요청하고, 아울러 필요시 국제표준에도 제안하여 우리기술을 국제표준에 반영하고자 한다.

4. 향후

한국산업표준과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중복시험 항목을 없애고 단일화 함으로써 표준과 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중복인증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KS표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각 부처별로 시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각 인증의 기준을 국제표준에 근거한 한국산업표준으로 일원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다.

또한 국제인증기구인 국제표준 인증체계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활용하여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표준과 안전기준이 국제표준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수출기업이 인증에 애로사항을 감소하도록 한다.

심 의 : 전기기기 분야 전문위원회

| 구 | 분 | 성명 | 근무처 | 직위 |
|----|----|----|-----|----|
| (위 | 원 | 장) | | |
| (위 | 원) | | | |

(간 사)

원안작성협력 : 시험 인증기관 담당자 연구포럼

| 구 | 분 | 성명 | 근무처 | 직위 |
|-----|----|----|-----|----|
| (연구 | 책임 | 자) | | |
| (참여 | 연구 | 원) | | |

전기용품안전기준의 열람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및 제품안전정보센터(<http://www.safety.korea.kr>)를 이용하여 주시고, 이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1~9)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이 안전기준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안전기준전문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KC 60335-2-43 : 2022-02-16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Safety**

**– Part 2-43 : Particular requirements
for clothes dryers and towel rails**

ICS 13.120; 97.06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http://www.kats.go.kr>



KAT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주소 : (우) 27737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TEL : 043-870-5441~9 <http://www.kats.go.kr>